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2-7호
2022. 1. 28.(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2-7호) 1

공 고(3)

- 도시계획시설(새뜸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공람공고(공고 제2022-95호) 2
-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관련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정정) (공고 제2022-103호) 4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2-116호) 13

입법예고(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91호) 1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94호) 21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97호) 26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112호) ... 3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115호) 39

공 람									
--------	--	--	--	--	--	--	--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송촌동 294-13	송촌남로 24	2022. 1. 28.	건물신축	행정구역명(송촌동)을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도시계획시설(새뜸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공람공고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22-5번지(새뜸어린이공원)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여 공원이용자 안전 및 편익을 증진시켜 주민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새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대덕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2022년 1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22-5번지 (새뜸어린이공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나. 사업의 명칭: 새뜸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 사업 시행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오정동)

4. 사업의 근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5.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적: 7,338.7m²

나. 규모: 공원 리모델링 1식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3.(예정)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계				7,338.7	7,338.7	-	-	-	-	-
1	덕암동	22-5	공	7,338.7	7,388.7	대전 대덕구	-	-	-	-

8.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9. 공람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 042-608-5113)

10. 관계도서: 게재생략. 끝.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관련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정정)

1.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회신시 '의견없음' 처리 예정)

2022년 1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동구 흥도동, 성남동, 삼성동, 정동, 신안동, 원동, 소재동, 대동, 신흥동, 인동, 효동, 천동, 판암동, 삼정동, 세천동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 하동리, 동평리, 금산리, 옥천읍, 삼청리	○ 연장 : 18.198km ○ 토공 : 6.855km ○ 교량 : 1.570km ○ 터널 : 9.773km	○ 사업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2. 열람장소, 열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과 (☎042-608-5102)	2022.1.14.~ 2022.1.28. (14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등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배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042-608-5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주요내용 1부. 끝.

[붙임]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주요내용

1. 사업의 명칭: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목적: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전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나. 효과: 고속철도 신설을 통한 철도수송능력 향상과 운행시간 단축 및 정비사업을 통한 철도변 주거환경 개선, 교통불편 해소

다.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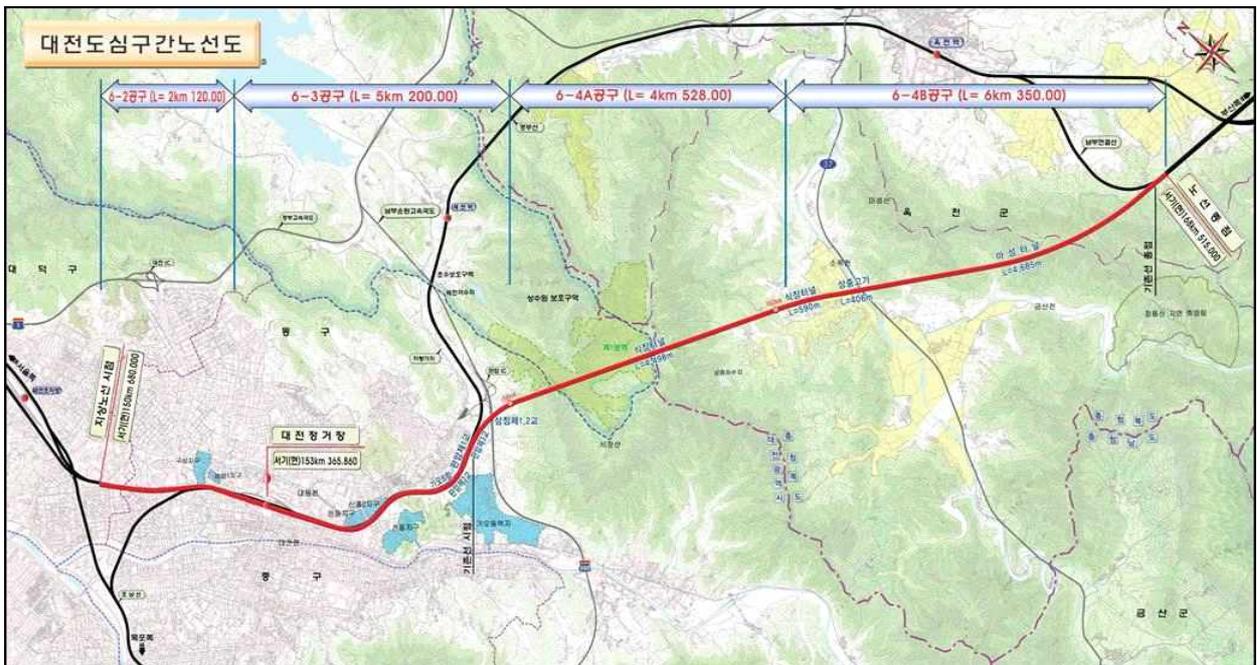
■ 사업 위치

도·자치시	구·읍·면	동·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동구	홍도동, 성남동, 삼성동, 정동, 신안동, 원동, 소재동, 대동, 신흥동, 인동, 효동, 천동, 판암동, 삼정동, 세천동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 하동리, 동평리, 금산리, 옥천읍, 삼청리

■ 사업 연장

과업연장		연장
대전광역시	서기(현)150km~서기(현)160km129 파정(+) 363.276	9km812.00
옥천군	서기(현)160km129~서기(현)168km525	8km386.00

■ 노선도



■ 사업 내용

구 분		과 업 내 용
노선의 연장		18,198m
노반 형식	토 공	6,855m
	교 량	1,570m
	터 널	9,773m
입체교차		18개소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용지 면적		1,039,825.35m ²

■ 사업 시행자

- 성명: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사업 시행기간

- 2007. 11. 30. ~ 2021. 12. 31.(~2022.12.30. 연장 예정)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자	2021년	2021년 이후
사업비	1,249,879,000,000	1,222,879,000,000	1,000,000,000	26,000,000,000

라. 사업추진 경위

- 1) 1983. 3. ~ 1984. 11: 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
- 2) 1989. 7. ~ 1991. 2. : 기본기술조사 및 기본설계 시행
- 3) 1996. 11. 9. : 경부고속철도 대전시구간 도시계획결정(건고356호, 지하화)
- 4) 2000. 2. 7. :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연결선 사업실시계획승인(건고2000-26)
- 5) 2002. 2. :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통과방안 연구용역(지상 결정)

- 6) 2004. 4. : 경부고속철도 1단계구간 준공
- 7) 2006. 8. 28 : 대전 지상화 기본계획 변경 고시(건교부 고시 제2006-337호)
- 8) 2007. 1. : 철도변 정비사업 시설계획 협의(한국철도시설공단↔대전광역시)
- 9) 2007. 5. : 한국철도시설공단 · 대전광역시 양해각서 체결
- 10) 2007. 11. : 실시설계 준공예정
- 11) 2007. 11. 30. : 사업실시계획 (최초)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16호)
- 12) 2008. 2. 29. : 사업실시계획(1차변경)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84호)
- 13) 2009. 5. 28. : 사업실시계획(2차변경)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68호)
- 14) 2010. 10. 14. : 사업실시계획(3차변경)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03호)
- 15) 2011. 11. 3. : 사업실시계획(4차변경)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4호)
- 16) 2012. 9. 11. : 사업실시계획(5차변경)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96호)
- 17) 2013. 7. 5. : 사업실시계획(6차변경)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0호)
- 18) 2013. 7. 26. : 사업실시계획(7차변경)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54호)
- 19) 2013. 11. 26. : 사업실시계획(8차변경)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5호)
- 20) 2014. 12. 29. : 사업실시계획(9차변경)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68호)
- 21) 2015. 11. 24. : 사업실시계획(10차변경)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31호)
- 22) 2016. 6. 30. : 사업실시계획(11차변경)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92호)
- 23) 2016. 9. 13. : 사업실시계획(12차변경)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07호)
- 24) 2018. 2. 20. : 사업실시계획(13차변경)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8호)
- 25) 2019. 12. 23. : 사업실시계획(14차변경)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01호)
- 26) 2021. 1. 5. : 사업실시계획(15차변경)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71호)

마. 대전광역시 사유지 현황

번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234-3	철	2.0	2.0	홍도동 1*7	오*세				
2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446-40	대	4.5	4.5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844 11*동 130*호(돈암동 브라운스톤돈암아파트)	이*석				
3	대전시 동구 홍도동	20-11	도	4.0	4.0	삼성312-*	김*엽				
4	대전시 동구 홍도동	23-18	도	21.0	21.0	서울 관악구 봉천동 1 관악현대아파트 12*동 100*호	박*기				
5	대전시 동구 홍도동	50-28	도	13.0	13.0	홍도동 5*	송*영				
6	대전시 동구 홍도동	50-32	도	3.0	3.0	홍도동 5*	송*영				
7	대전시 동구 홍도동	50-33	도	10.0	10.0	홍도동 5*	송*영				
8	대전시 동구 홍도동	50-34	도	7.0	7.0	홍도동 5*	송*영				
9	대전시 동구 홍도동	50-35	도	20.0	20.0	홍도동 5*	송*영				
10	대전시 동구 홍도동	50-36	도	6.0	6.0	홍도동 5*	송*영				
11	대전시 동구 홍도동	50-37	도	10.0	10.0	홍도동 5*	송*영				
12	대전시 동구 홍도동	50-38	도	13.0	13.0	홍도동 5*	송*영				
13	대전시 동구 홍도동	50-88	도	70.0	70.0	홍도동 5*	송*영				
14	대전시 동구 홍도동	52-4	도	46.0	46.0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7-2 한풍상가 40*호 40*호	신동아건설주식회사				
15	대전시 동구 홍도동	52-6	도	20.0	20.0	삼성동 25*-3	권*수				
16	대전시 동구 홍도동	148-3	도	10.0	10.0	홍도동 14*	박*하				
17	대전시 동구 홍도동	157-25	답	164.0	3.0	대전 서구 월평서로*번길 66 20*호(월평동)	김*중				
18	대전시 동구 성남동	130-15	대	950.0	0.9	성남동13*-15	대한예수교장로회선광교회				
19	대전시 동구 삼성동	107-9	대	104.5	0.5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2리 2*1	조*용				
20	대전시 동구 삼성동	148-69	도	3.0	3.0	삼성동 24*	유*천				

구번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21	대전시 동구 삼성동	150-60	도	516.0	516.0	서울 종로구 명륜동 1가 8*-6	김*영				
22	대전시 동구 삼성동	150-88	대	368.0	1.0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14*(삼성동)	주식회사호수조명	공유지분			
23	대전시 동구 삼성동	295-5	대	237.6	8.9	충남 논산군 논산읍 반월리 17*-2	조*천				
24	대전시 동구 삼성동	295-6	대	90.1	3.6	삼성동 295-*	조*천				
25	대전시 동구 삼성동	302-147	대	41.1		서구 삼천동 991 국화아파트 20*동 70*호	강*산				
26	대전시 동구 삼성동	302-149	대	12.2	12.2	서구 삼천동 991 국화아파트 20*동 70*호	강*산				
27	대전시 동구 삼성동	302-150	대			서구 삼천동 991 국화아파트 20*동 70*호	강*산				
28	대전시 동구 신안동	293-1	학	9,391.0	14.0	동구 자양동 155-*	학교법인우송학원				
29	대전시 동구 신안동	298-3	구	175.0	74.0	신안 29*	한*봉				
30	대전시 동구 신안동	300-5	대	209.0	3.0	대동 8-*	김*권				
31	대전시 동구 원동	101-48	대	2.7	1.0	유성구 전민동 464-1 엑스포아파트 30*동 150*호	손*관	근저당권	대전 중구 은행동 150	대전투자금융 주식회사	
								근저당권	대전 중구 대흥동 198-1	주식회사쌍인 상호신용금고	
32	대전시 동구 원동	102-3	대	59.5	2.0	대전 서구 만년로 25, 105동 30*호(강변아파트)	김*신	근저당권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23번길 20	대전교직원 신용협동조합	

구번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33	대전시 동구 원동	102-11	대	57.9	2.0	대구 수성로 청호로438 10*동130*호(범어동 범어라운프라이빗2차)	이*기				
34	대전시 동구 원동	102-13	대	57.9	3.0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로 37 10*동210*호(목동 목양마을아파트)	원*남	근저당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8 103호(원동, 뜰안채)	원중앙 새마을금고	
35	대전시 동구 원동	102-18	대	66.4	1.0	원동 102-1*	윤*진				
36	대전시 동구 원동	102-19	대	72.4	1.0	신안동 308-*	송*호				
37	대전시 동구 원동	102-20	대	74.7	2.0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04 10*동 60*호(춘천장학사랑으로부영)	양*순				
38	대전시 동구 원동	102-23	대	79.3	2.0	대전 중구 서문로 96, 20*동 140*호(문화동 센트럴파크)	김*당	근저당권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35-3, 뜰안채주상복합 제1층제103호	원중앙 새마을금고	
39	대전시 동구 신흥동	95-20	대	0.1	0.1	신흥동 95-1*	이*철				
40	대전시 동구 신흥동	149-21	대	40.0	40.0	은행동 15*	이*복				
41	대전시 동구 신흥동	149-38	도	31.0	31.0	대전시 인동 14*	이*순				
42	대전시 동구 신흥동	213	대	344.8	3.8	대전 유성구 덕명로 26 10*동 30*호(덕명동 운암네오미아아파트)	장*탁	근저당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230(석교동)	충절로 신용협동조합	
								지상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230(석교동)	충절로 신용협동조합	
43	대전시 동구 인동	24-40	대	30.4	4.0	인동24-4*	백*현				
44	대전시 동구 인동	24-51	대	13.2	7.0	인동9*	이*기				
45	대전시 동구 인동	24-53	대	36.0	16.0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번길 3*(인동)	송*정				
46	대전시 동구 인동	149-11	도	179.0	179.0	대전시 동구 중구 대흥동 326-10*	박*덕				
47	대전시 동구 인동	254-3	답	2.0	2.0	효동 29*	주*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48	대전시 동구 효동	135-18	대	344.0	5.0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3-*(판암동)	신*수				
49	대전시 동구 판암동	138-3	대	261.0	98.0	충북 옥천군 옥천면 문정리4*	정*용				
50	대전시 동구 판암동	382-3	전	1,654.0	866.0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106번길 14*(판암동)	박*실				
51	대전시 동구 판암동	397-5	도	56.0	2.0	판암 39*	김*진				
52	대전시 동구 판암동	453	전	47.0	13.0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84 50*호(관저동 밀레니엄빌딩)	주식회사 리치*리스	근저당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차들로 50(다가동)(백석지점)	대전.충남 양돈축산협동조합	
53	대전시 동구 판암동	454	전	202.0	24.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11 130*호(목동 부영그린타운3차)	이*배	근저당권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358	동대전 농업협동조합	
								전세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2(소공동)	주식회사스타벅스 커피코리아	

공 시 송 달 공 고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시행하는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1. 12. 15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사 업 명 :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 대화동 일원
3. 사업시행자 :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1. 12. 15.)
5. 공고 기간 : 2022. 1. 28. ~ 2022. 2. 18.(21일간)
6. 공시송달 대상자 : 강윤성(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심1길 1111동401호)
7. 공시송달 사유 : 폐문부재
8.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 042-608-5373)
(주소 : 대전광역시 대전로 1033번길 20, 별관 4층)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 위탁에 관한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대덕구민 기자단과 서포터즈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덕구민 기자단과 서포터즈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함(안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나. 사무의 특성상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용역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업체 선정 시 절차와 방법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전화: 042-608-6533, FAX: 042-608-3811, E-mail: nis0323@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전화: 042-608-65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촉기간은 1년으로”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덕구민 기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임기는 1년으로”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업무의 위탁)”을“(홍보매체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효율적”을 “효율적인”으로,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 업체와 용역 계약을 통해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 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대덕구민 기자단 구성 및 운영) ① (생략)</p> <p>② 대덕구민 기자단 위촉인원은 100명 이내로 하되, <u>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u></p> <p><u><신 설></u></p> <p>③ (생략)</p> <p>제8조(서포터즈의 운영) ① (생략)</p> <p>② 서포터즈는 SNS를 활발히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구정에 관심이 많고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u>임기는 1년으로 한다.</u></p> <p><u><신 설></u></p> <p>③·④ (생략)</p> <p>제11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홍보매체의 <u>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p>제7조(대덕구민 기자단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u> -----.</p> <p>③ <u>대덕구민 기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8조(서포터즈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u> ----.</p> <p>③ <u>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u></p> <p>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제11조(홍보매체 운영) ① ----- ----- <u>효율적인</u> ----- <u>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 업체와 용역 계약을 통해 관리·운영</u>-----.</p>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 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에 따른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

은 2022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전화: 042-608-6046, FAX: 042-608-3811, E-mail: phj890105@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전화:
042-608-60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를 따른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정비심의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덕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구성, 존속기간 등을 정함(안 제2조).
- 나. 위원장 등의 직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회의의 소집요건, 의결요건 등을 정함(안 제4조).
- 라. 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무 등을 정함(안 제5조).

마.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위원회 참석자 수당 등을 정함(안 제7조).

사.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전화: 042-608-6042, FAX: 042-608-3811, E-mail: noella75@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 (전화: 042-608-6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

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
· 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시
내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민간위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
함(안 제9조제1항).

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구체화 함(안 제11조제2
항제2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조문의 체계를 정비함(안 제18조 및 제2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공동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공동체과

(전화: 042-608-6613, FAX: 042-608-3830, E-mail: kymbio@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과 담당자 (전화: 042-608-66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 조례에 없는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마을공동체”를 “제9조제1항 각 호의 마을공동체”로, “지원”을 “사무 위탁 및 지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복지사업법」”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생략)

제22조(지원센터 공간의 활용 및 개방) ①·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복지사업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단체가 목적에 따라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2조(지원센터 공간의 활용 및 개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 「청소년 기본법」-----.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지하수 누수 등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이용자에게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제도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하수 누수 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안 별지 서식).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함(안 제2조 및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

(전화: 042-608-5223, FAX: 042-608-3844, E-mail: soohyun0115@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과 담당자 (전화: 042-608-52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계기”를 “계기(計器)”로 한다.

제9조 중 “관할 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최근 감면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text{누수량} = (\text{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text{해당 월분 이외의 바로 이전 3개월 간의 평균 사용량}) \div 2$$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의 지하수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하수 누수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 략)</p> <p>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p> <p>4. (생 략)</p> <p>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u>관할 구역</u>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관리 특별 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계 <u>기(計器)</u>----- -----.</p> <p>4. (현행과 같음)</p> <p>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운영) ----- ----- <u>관할구역</u> ----- ----- ----- ----- ----- ----- -----.</p> <p><u>제12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u></p>

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
는 최근 감면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
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text{누수량} = (\text{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text{해당 월분 이외의 바로 이전 3개월 간의 평균 사용량}) \div 2$$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
는 자는 당초 부담금의 납부기
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
지 별지 서식의 지하수 누수요
금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